

국제교육원운영위원회규정

제정 : 2010.03.01
개정 : 2014.07.01
개정 : 2014.09.13
개정 : 2020.12.01
개정 : 2021.12.01
개정 : 2022.10.01
개정 : 2023.10.16

제1조(목적) 이 위원회는 국제교육원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라 한다. <개정 2022.10.01., 2023.10.16.>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우리 대학과 국제기관 간에 교수, 학생, 직원의 교류와 학술자료, 문화교류 등 인적 및 물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심의를 통해 대학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연구 및 심의하여 결정한다.

1. 우리대학 국제교류 정책 수립 및 장기발전계획 연구
- 해외분교, 캠퍼스, 교육원 및 연구소의 대한 계획

(해외 유학생의 취업맞춤형 인재모집과 본교학생의 어학연수, 인턴십에 관한 사항)

2. 국제교류 협정에 따른 교직원 해외파견 선발 관련 심의
3. 외국 자매대학 개발 및 유지
4. 외국 대학과의 학생교환 및 학점교환제도의 개발, 심의
5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6. 국제적 문화예술의 개발, 추진
7.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8.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전형 계획, 방법, 절차,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<신설 2020. 12. 01.>

9. 기타 국제교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② 위원장은 국제교육원장으로 하며,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. <개정

2014.07. 1., 2018.09.13., 2022.10.01., 2023.10.16.>

③ 위원은 본 대학 전임교원과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14.07.01., 2020.12.01.>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시 보충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21.12.01>

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개최하며, 회의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 <신설 2020.12.01.>

제6조(주관부서) 위원회의 주관부서는 국제교육원 국제교육팀으로 하며, 국제교육팀에서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고 그에 따른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. <개정 2014.07.01., 2018.09.13., 2021.12.01., 2022.10.01., 2023.10.16.>

제7조 <삭제 2014.07.01.>

제8조(자문 및 자료제공 요청) 위원회는 총장, 처(원)장으로부터 자문 또는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.

제9조(예산) 대학은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 <삭제 2014.07.01.>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규정명변경) 이 규정은 국제교육센터운영위원회규정에서 국제교육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규정명을 변경한다.